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603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6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소1793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올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홍서현

피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변론 종결2024. 11. 8.

판결 선고2024. 12. 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소179336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C는 2020. 6. 4. 원고로부터 10,000,000원[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대출기간 만료일 : 2025. 6. 4.]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그 대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500,000원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C는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바람에 2022. 8.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9. 29.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해지하여 면책되었다.'라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소상공인 금융지원용)'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피고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면책기준'의 각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소상공인 금융지원용)

제4조(위탁업무처리원칙)

① 수탁기관(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의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3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기관(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수탁기관용 업무처리 규정"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통지한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 책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

제16조(인적·물적 담보의 해지)

수탁기관이 제5조에 따른 부실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 관련 인적·물적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

부득이 인적·물적 담보를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관할영업점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면책기준

1. 보증위탁계약 위반 면책기준

면책사항

7. 수탁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해지한 때

라.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동의 없이 부실사유 발생 후에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한 때

라. 한편, C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1	1998. 2. 10.	가계일반자금대출(모기지론) / 회전대	40,000,000 / 60,000,000	130,000,000	포괄근담보1) [포괄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2) 실제 대출금은 40,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순번1 대출금과 관련된 대환 대출이다.3)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그 아래 '거래, 거래'라는 부분이 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와 같이 한정근담보로 설정된 것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포괄근담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2	2001. 3. 13.	가계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140,000,0002) [특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그 아래 '년월일자 약정서'라는 부분이 있다)	52,000,000	포괄근담보
3	2007. 4. 23.	가계일반대출(모기자·원리금)	80,000,000	82,000,000	포괄근담보
4	2012. 2. 1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100,000,000	130,000,000	한정근담보3)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 연체 이후 C로부터 순번2 내지 순번4 기재 각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22. 8.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부실사유 발생 후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그 외에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면책기준'의 효력, 이 사건 대출금 채무 관련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될 경우 그 액수가 9,500,000원이라는 점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산으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 행위가 은행 대차관계에서 이례에 속하여 관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38899 판결).

○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순번1 내지 순번3 각 근저당권의 경우 포괄근담보이고, 순번4 근저당권의 경우 한정근담보인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각 계약서의 해당 부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 자체가 이례에 속한다거나 그 당시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 원고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에 해당하므로[위 각주1) 가.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번1 내지 순번3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비록 순번4 근저당권이 한정근담보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위 각주3) 참조], 위 근저당권 자체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같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한정근담보의 의미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 이상, 순번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 이전 작성된 승인장(갑 제8호증)의 '④ 담보현황'에 피고의 위 신용보증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내부의 C에 관한 담보설정내역조회(갑 제14호증)에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가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보증만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담보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는 '원고와 C는 위 순번1 내지 순번4 기재 각 대출금 채무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관련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괄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순번2 기재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이 140,000,000원인데도,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2,000,000원에 불과하므로(이는 100,000,000원이 대한 대출이고, 순번1 근저당권으로 위 대한 대출 채무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점, 순번3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담보채권 범위를 위 순번3 기재 대출금 액수가 거의 비슷한데, 그것이 원고의 개정된 내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순번1 내지 순번3 각 근저당권이 모두 포괄근담보임을 전제로 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담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500,000원을 변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사실 역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로서는 피고의 보증 자체가 이른바 상당히 우량한 담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보증인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 등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와 구조의 구상 방법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94,0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10,000,000원에 불과하며, 거기에 피고의 보증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발행·교부할 당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까지 고려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판사이의진

1)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2) 실제 대출금은 40,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순번1 대출금과 관련된 대환 대출이다.

3)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그 아래 ' 거래, 거래'라는 부분이 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한정근담보로 설정된 것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포괄근담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2)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그 아래 ' 년월일자 약정서'라는 부분이 있다)